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11. 10.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과정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10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7. 11. 3)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 가. 제안이유
 - 자치시대의 요보호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 부녀복지 상담원의 명칭을 상담원으로 개칭하여 대민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음.
- 나. 주요골자
 -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중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직명중 '부녀복지 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부녀상담원)'으로
 - 여성복지 상담원의 '6급상당', '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 전면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영훈)

동조례(안)의 개정은 부녀복지 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임용자격에서 6급상당의 자격기준중 제3호 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하였고 7급상당의 자격기준중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여자와 제2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를 각각 제1호 4년제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와 제2호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 이상 경력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개정된 윤락행위방지관련법령이 '96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요보호여성보호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별정직 여성복지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정원조정 승인 통보도 있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	-----

제출년월일 : '97. 10. 2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시대의 요보호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 부녀복지상담원의 명칭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칭하여 대민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중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직명중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으로

- 여성복지상담원의 “6급상당”, “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 전면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5조 및 부칙제5조(부녀복지 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 별정직공무원 정원조정 통보 : 시정12200-713('96. 8. 28)호

나. 연간소요추가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참고사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별표1>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내용 중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의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으로 하고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복지상담원 (부녀상담원)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상담처리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자격중소지자 3.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 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 2.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 이상 경력자 3.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 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8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부너복지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용·배치된 부너복지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부너상담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1>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2. 부너청소년, 아동복지분야					<별표1>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2. 부너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구 정 가정복지과 장	(생략)	(생략)	(생략)		구 정 가정복지과 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너복지상담원	6급상당 (수석상담원)	· 부너상담처리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여자 2.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3.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자	보사부 예규 제600호 ('91.9.9)	여성복지상담원 (부너상담원)	6급상당	· 부너상담처리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3.여성복지상담원(부너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급상당 (수석상담원)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 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여자 2.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3.일반상담원(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여자			7급상당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 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 2.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이상 경력자 3.여성복지상담원(부너상담원)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8급상당 (수석상담원)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 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자 2.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8급상당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 상담 ·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자 2.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가정복지상담원	(생략)	(생략)	(생략)		가정복지상담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훈련교사	(생략)	(생략)	(생략)		훈련교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원)	(생략)	(생략)	(생략)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지도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